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0250

발의연월일: 2025. 4. 30.

발 의 자:이병진·오세희·박용갑

김동아 · 허성무 · 주철현

송옥주 · 권향엽 · 이원택

이상식 · 서삼석 의원

(1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해 수입농산물 비축 및 수매사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WTO 수입의무물량과 수급 부족 물량을 수입·비축하였다가 방출하는 수입비축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훈령에 따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음.

최근 고물가 상황으로 수입비축사업의 물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물가 안정에 대한 소비자 체감 효과는 미미한 실정임. 또한 정부가 수입 및 공급 전반에 대한 관리를 직접 수행하는 국영무역 품목사업의 경우 수입단계 이후의 공급 및 판매 등에 대한 파악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수입비축사업의 취지 및 목적 달성 여부를 파악하는 데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영무역 품목의 수입비축사업에 따라 수입농산물을 공급받은

자로 하여금 수입물량 배분 및 판매 실적 등을 위탁사업수행기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부가 사업의 효과성 및 배분의 적절성 등 사후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여 보다 체계적인 사업 관리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실수요자, 농업인단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통한 정부의 수입농산물 수입비축사업의 실효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3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3조의2(비축사업 관리) ① 제13조제4항에 따라 국영무역 품목에 해당하는 수입비축사업을 위탁받은 자(이하 "위탁사업자"라 한다)는 농산물 수입을 위한 사전검토 사항, 수입 및 판매 계획, 공급업체선정,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당해연도 국영무역 품목에 대한 수입농산물관리운용계획을 매년 3월말까지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수입농산물을 공급받은 자는 당해연도 국영무역수입농산물판매실적을 다음해 상반기까지 위탁사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위탁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실적을 토대로 물가안정 등 사업 효과성과 배분의 적절성 등을 파악하기 위한 점검을 실시하고, 그 점검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점검결과를 토대로 실수요자, 생산자, 농업인 단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연도 수입농산물관리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수입농산물관리운용계획 수립 및 반영·판매실적·사업 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13조의2(비축사업 관리) ① 제1
	3조제4항에 따라 국영무역 품목
	에 해당하는 수입비축사업을 위
	탁받은 자(이하 "위탁사업자"라
	한다)는 농산물 수입을 위한 사
	전검토 사항, 수입 및 판매 계
	획, 공급업체 선정,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당해연
	도 국영무역 품목에 대한 수입
	농산물관리운용계획을 매년 3
	월말까지 수립하여 농림축산식
	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입농산물을
	공급받은 자는 당해연도 국영무
	역 수입농산물판매실적을 다음
	해 상반기까지 위탁사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탁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실적을 토대로 물가안
	정 등 사업 효과성과 배분의 적
	절성 등을 파악하기 위한 점검
	을 실시하고, 그 점검결과를 농
	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
	여야 한다.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 항에 따라 보고받은 점검결과를 토대로 실수요자, 생산자, 농업 인 단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 렴을 거쳐 다음연도 수입농산물 관리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 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수입농산물관리운용계획 수립 및 반영·판매실적·사업 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 품부령으로 정한다.